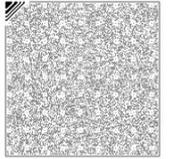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대한약사회장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

1. 관련: 대한약사회 대약 제2019-0673호(2019.7.29.)
2. 위 문서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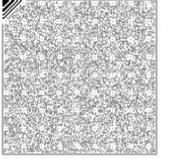
- 다 음 -

○ 질의 사항

- 「약사법」 제30조제1항 중 환자의 인적 사항에 환자의 연락처 포함 여부

○ 답변 사항

- 「약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(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)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, 조제 연월일, 처방 약품명과 일수,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(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)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·보존의무를 부과한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, 대법원은 동 규정이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의사에게 강제되는 있는 진료기록부 작성·보존 및 처방전 발행에 대응하여 신설된 조향인 점을 입법경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(대법원 2005도7505, 2006. 1. 26. 선고 참조).
- 귀 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, 조제기록부 작성·보존의무를 부과한 상기 규정과 그 입법경위, 의료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인적사항의 내용, 약화사고 발생 시 조제기록부를 이용한 사후적 환자안전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, 상기 「약사법」 제30조제1항 중 '환자의 인적 사항'으로 환자의 연락처(다만, 진료기록부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약국의 조제행위와 복약지도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목적으로 가능하며, 이외의 다른 약국업무 등을 목적으로한 수집, 활용은 불가함)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주무관 **원정우** 기술서기관 **정재호** 약무정책과장 **윤병철** 전결 2019. 8. 23.

협조자

시행 약무정책과-3348 (2019. 8. 23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91 팩스번호 044-202-3927 / jwwon3595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